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자연재해는 여러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경향을 나타내므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태풍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와 동시에 바람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피해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재해발생시 지역과 중앙정부간 유기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2013. 12월 구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
- 최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상 및 재해유형이 확대되어 기수립된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3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주요내용

○ 과업개요

- (공간적 범위) 관내 전역 $A=615.29\text{km}^2$, 하천연장 $L=409.68\text{km}$
-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
- (대상재해 범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 2019. 11 세부수립기준 개정 반영

○ 저감대책 수립(안)

- (자연재해위험지구) 64개소
- (총사업비) 3,388억원 *매칭사업(5:5)
- (시행계획) 2021년 ~ 2030년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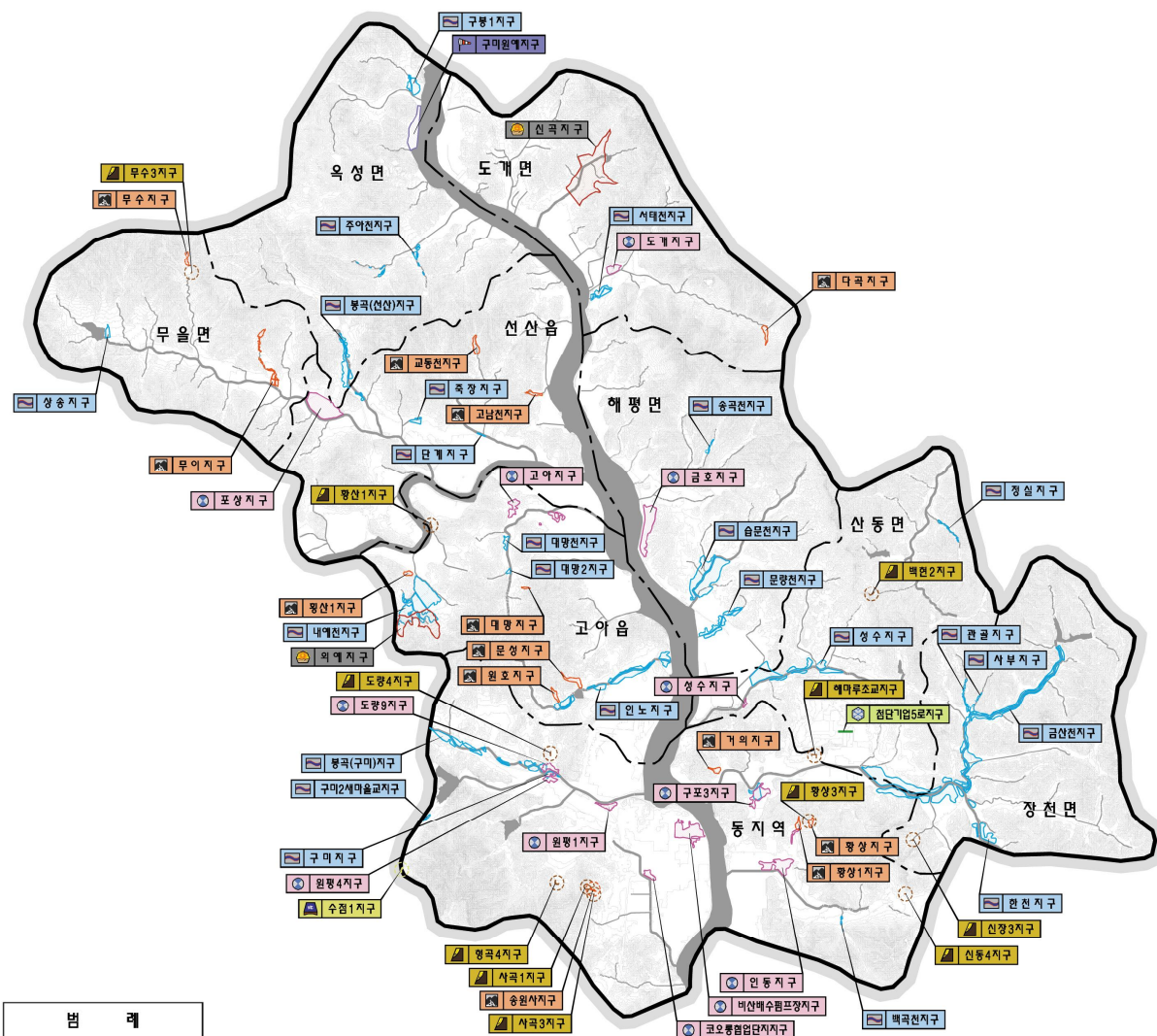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 읍·면·동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안)

- (예비후보지 선정) 읍면동, 이·통장, 관련부서 설문 및 탐문 조사
- (후보지 선정)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
- (위험지구 선정) 관련실과 협의 후 저감대책 수립

구 분		계	하 천	내 수	사 면	토 사	바 람	대 설	가 목	기 타
계	예비후보지	1,926	911	195	124	337	40	70	29	220
	후보지	452	188	72	73	85	11	7	6	10
	위험지구	64	24	12	10	13	1	1	2	1
선산읍	예비후보지	187	103	16	9	31	10	1	6	11
	후보지	51	13	12	5	15	6	-	-	-
	위험지구	6	3	1	-	2	-	-	-	-
고아읍	예비후보지	191	119	13	3	29	3	-	5	19
	후보지	64	36	12	2	10	-	-	1	3
	위험지구	11	4	1	1	4	-	-	1	-
무을면	예비후보지	154	54	-	5	56	4	1	5	29
	후보지	42	14	-	4	23	-	-	-	1
	위험지구	4	1	-	1	2	-	-	-	-
육성면	예비후보지	154	54	-	6	71	2	-	4	17
	후보지	33	10	-	5	14	1	-	-	3
	위험지구	3	2	-	-	-	1	-	-	-
도개면	예비후보지	133	53	8	5	37	6	1	2	21
	후보지	21	5	7	5	2	-	-	2	-
	위험지구	4	1	1	-	1	-	-	1	-
해평면	예비후보지	130	48	9	8	36	5	1	2	21
	후보지	15	7	2	2	2	1	1	-	-
	위험지구	4	3	1	-	-	-	-	-	-
산동면	예비후보지	164	87	9	8	9	3	16	-	32
	후보지	42	28	2	4	4	1	2	-	1
	위험지구	5	2	1	1	-	-	1	-	-
장천면	예비후보지	210	86	42	13	14	4	-	5	46
	후보지	51	22	11	9	4	2	-	3	-
	위험지구	4	3	-	1	-	-	-	-	-
동지역	예비후보지	606	307	98	67	54	3	53	-	24
	후보지	133	53	26	37	11	-	4	-	2
	위험지구	23	5	7	6	4	-	-	-	1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범례	
	하천제에 위험지구
	내수제에 위험지구
	사면제에 위험지구
	토사제에 위험지구
	바람제에 위험지구
	가옥제에 위험지구
	대설제에 위험지구
	기타제에 위험지구

4.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본 계획은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615.29km²에 이르는 구미시 전 지역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괄 로드맵임.
- 최근 자연재해는 국지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띠며, 기상이변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지역 재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정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 복구위주의 방재정책에서 예방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음.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 경과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고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뭄, 대설 등 확대된 재해유형을 포함하여 2030년을 목표년도로 종합계획(안)을 다시 수립하였음.

- 조사된 유형별 선정지구는 총 64개소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24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12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10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 13개소, 가뭄재해 위험지구 2개소, 바람·대설·기타 위험지구 각 1개소이며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3,388억원임.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사전검토 의견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저감대책이 실질적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